

취약계층 고용증명서 발급 안내

-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 추진 배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 추진 배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의 후속조치
 -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인견적 수의계약 확대(2천만원→5천만원)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중략>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 4), 5), 6)에 해당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2.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발급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text{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text{전체 유급근로자}) \times 100 \geq 30$$

◆ 근로자 인정 기준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상 취약계층

※ 전체 근로자 수가 1명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2.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2.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 **증명서 발급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유의 사항

- 처리기간 : **신청 접수일(우편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 완료 /발급시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 우편 신청시 증빙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뒷번호 삭제/가림 처리 이후 제출
 - ※ 주민번호노출시 해당서류우편으로 반송, 수정하여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서류가 도착한 시점에 접수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 반드시 첨부
- 검토(승인) 결과 수신 가능한 이메일 및 핸드폰번호 반드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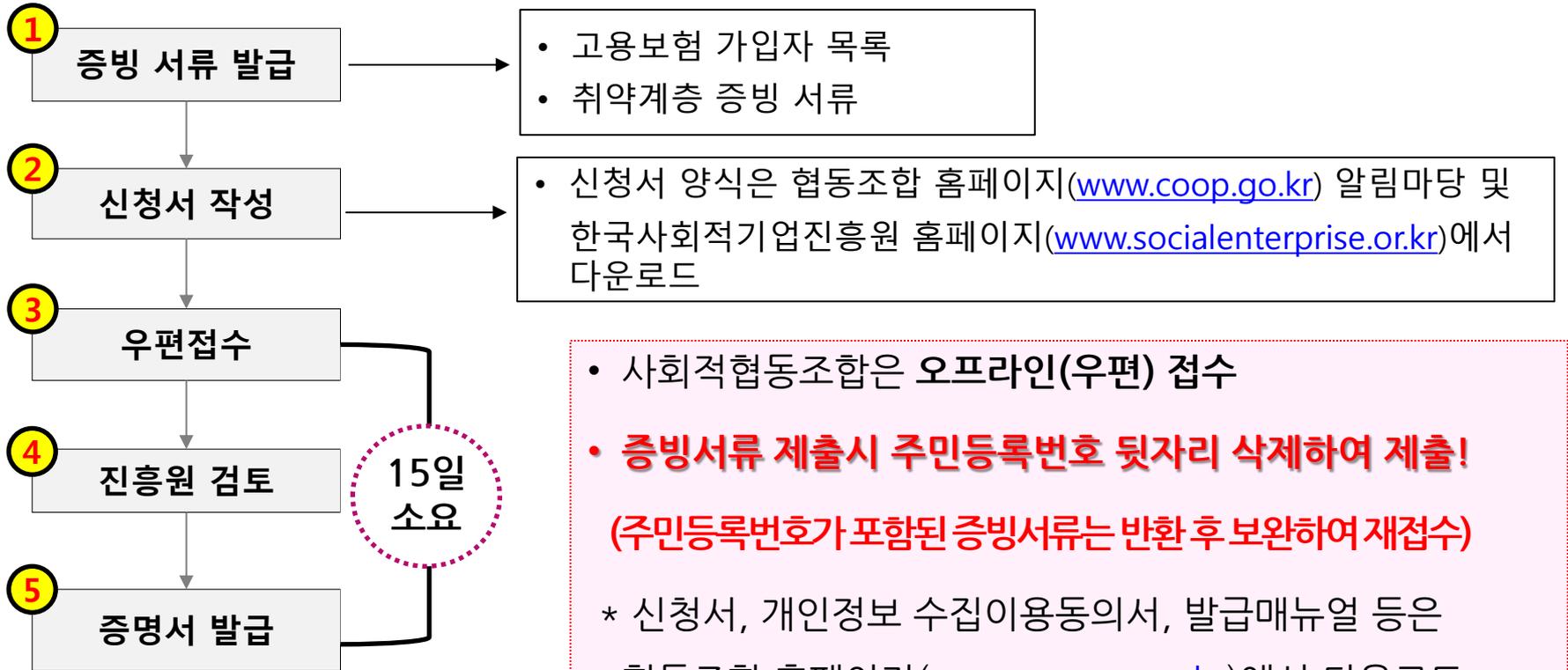
3. 증명서 발급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3. 증명서 발급 안내

발급 절차



우편접수, 검토 기간,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 요망

- 사회적협동조합은 오프라인(우편) 접수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서류는 반환 후 보완하여 재접수)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발급매뉴얼 등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다운로드
- 명단을 **제출하는 유급근로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 必**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누락시,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검토 및 발급 불가능)

4. 취약계층 증빙서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4. 취약계층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제도 통계및정보공개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자료실 로그인 영력재어 사이버법

미전송	전송완료	접수완료
0	0	0
처리완료	반려	오류
1	0	0

미전송	처리중	처리완료
0	0	0
보장	반려	
0	0	

1. 고용보험(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2. 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4. 취약계층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근로자별 가입여부 조회(상용)

근로자별 가입여부 조회(일용)

가입자 자료 요청 및 다운로드

일용근로내용 신고현황 조회

하수급인 등록내역 조회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전자동지서 수신현황 조회

수입사업장별 온라인 신고내역

반환액 및 납부(가상)계좌번호 조회

승인/미승인하수급 조회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보수총액신고 근무지코드 조회

» 기업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안내

- 검색자료량이 많은 내용은 [가입자 자료 요청 및 다운로드]메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화면은 피보험자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화면이며, 법정양식이 아니므로 인쇄 시 직인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 상실자 목록은 조회기간(최대 5년)을 입력 하신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장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미승인 하수급관리번호	<input type="text"/>
사업장 명칭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요청목록	<input checked="" type="radio"/> 취득자 <input type="radio"/> 상실자 <input type="radio"/> 일용근로자		
성별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결별조건	<input checked="" type="radio"/> 생년월일 <input type="radio"/> 성명 <input type="radio"/> 근로년월		
기간조회	<input type="radio"/> 현재일기준 <input checked="" type="radio"/> 특정입력연기준: 2017/12/31		

검색

총 130건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요청구분			생년월일	성명	성별
	하수급 관리번호	취득일자	전입일자	상실일자	직종		
1							
2							
3							
4							
5							
6							
7							
8							
9							
10							

« « 1 2 3 4 5 6 7 8 9 10 » »

엑셀 추출

화면 인쇄

전체 인쇄

2. 현재일 기준 체크(신청일자 기준)



3. 전체 인쇄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삭제 후 제출!!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귀속년도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정수의무자	지급명세서보기	신고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입니다.

3. 지급명세서보기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2. 세대주 성명(시설명): _____
(세대주와의 관계: _____)

3. 주소(소재지): _____

4.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 발급절차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민원분야: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클릭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수급자증명서**



민원안내

- 전체 민원검색
- 기관별 민원
- 분야별 민원**
- 테마별 민원
- 색인별 민원
- 민원레키지서비스

자주찾는 민원정보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전입신고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병적증명서
-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지적도(임야도)열람 등본
-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

알면 도움되는 서비스

- 금융진단 컨설팅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 자동차 검사 예약
- 소비자 신고센터 신고 접수
- 금융주소 한번에 변경

대한민국정부

분야별 민원

5,000여 종의 민원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10개 민원 분야별로 2단계 상세 분야를 선택하시면 해당 분야별 민원사무목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민원사무명을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상세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민원분야

- 주민생활
- 생활환경
- 국가인프라
- 지식활동
- 사회복지**
- 국민건강
- 여가활동
- 공공안전
- 경제활동
- 해외·남북교류

사회복지 상세분야

- 장애민복지(25)
- 노인복지(30)
- 기초생활보장(47)**
- 근로자복지(224)
- 보훈복지(94)
- 청소년복지(26)
- 사회보장(337)

· 밑줄이 처진 민원사무는 온라인신청 가능한 민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신청
- 교육급여 이의신청
- 구인·구직신청
- 국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외취업자모집신고

1. 민원24>분야별 민원> 민원분야: 사회복지

2.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일반) 발급신청	
수급자	성명 * 1 <input type="text" value="신형인"/>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text" value="123456"/> - <input type="text" value="●●●●●●"/>
	주소 * 2 <input type="text" value="주소검색"/>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세대주	세대주성명 *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세대주와의 관계 * 3 <input type="text" value="검색"/> 본인
기타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in-height: 100px;">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일반) 발급신청 입니다.</div> <p style="color: green; font-size: small;">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선택하는 경우만 입력 가능합니다.</p>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 * 4 <input type="text" value="검색"/> 방문수령
	수령기관 선택 5 <input type="text" value="검색"/>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신청내용	용도 * <input type="text" value="열람"/>
	제출처 * <input type="text" value="공공기관"/>
	수급자와의 관계 * 6 <input type="text" value="검색"/> 본인
발급부수 *	<input type="text" value="1"/> 부
신청일	2009 년 06 월 08 일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2017.1.11.개정)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자용		즉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위: 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과세대상금액)	총결정금액
귀속연도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인)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이월결산금액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과세대상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금액(과세소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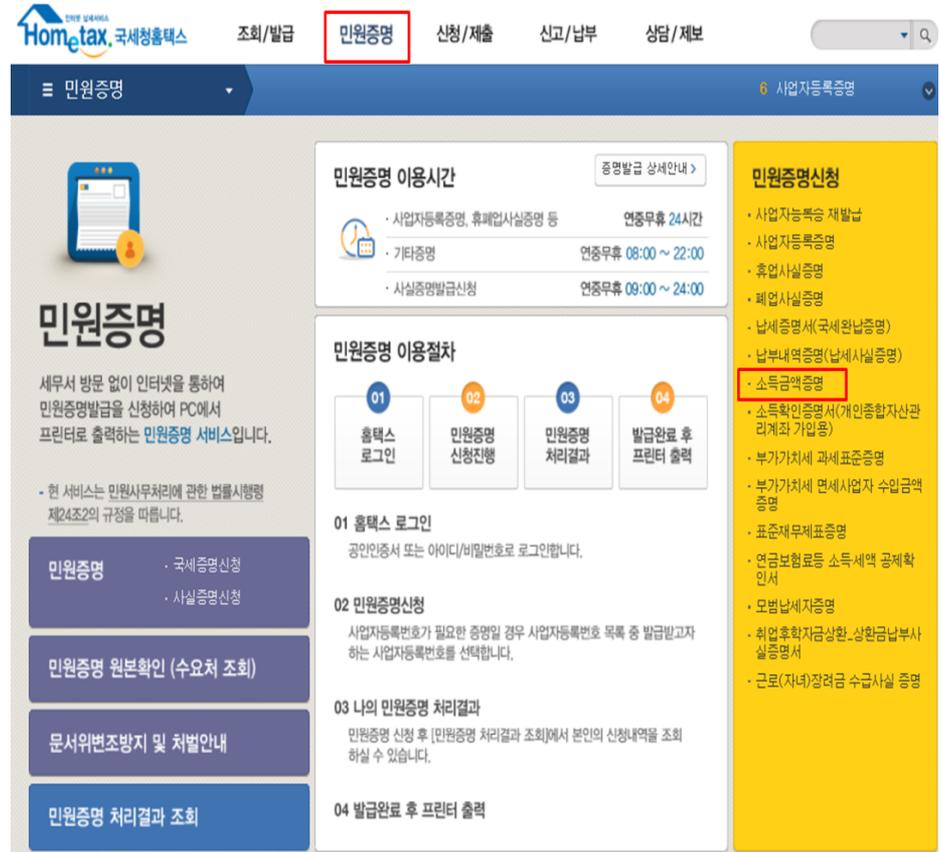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소득금액증명



1.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소득금액증명

④ 기본 인력 사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010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마스크(●●●●)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내용

발급유형	<input type="radio"/> 한글증명 <input type="radio"/> 영문증명
증명구분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자용 (※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와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자)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과세기간	2017 <input type="text"/> 년 ~ 2017 <input type="text"/> 년
사용용도	-선택-
제출처	-선택- ※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본 2매(변경가능)

⑥ 수령방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 (비공개시 출력 예 : 881111-*****)
주소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 (비공개시 출력 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수령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input type="radio"/> 인터넷출력(화면조회)
발급희망수량	1 <input type="text"/> 매

[신청하기](#)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민원24)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삭제 후 복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귀화신상번호)	
	영문명		
	주소	사진 3.5cm×4.5cm	
	보호자		
주장애 및 종합장애 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용도			
제출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4. 취약계층 증빙서류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4. 취약계층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별지 제1호2서식]

제 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입 국 일	
	생년월일		보호결정일	
상기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관인</div>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혹은 방문신청(각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

발급절차: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해외남북교류;

새터민지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서출력

4. 취약계층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안내

전체민원검색

기관별민원

분야별민원

데마별 민원

색인별민원

민원패키지서비스

민원안내 홈 > 민원안내 > 분야별 > 해외·남북교류 > 새터민지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자침 : 별지서식 1호의 2)		

이 민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기본정보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Q 시·군·구 Q 읍·면·동 Q 통일부 Q 각 시도	→	처리 Q 시·군·구 Q 통일부 Q 각 시도
--	---	---

※ Q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1. 민원안내>분야별민원> 해외남북교류>새터민지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민원신청하기
3.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서출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내용

성명*	유관순	생년월일*	1902 년 12월 16 일
-----	-----	-------	-----------------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검색 <input style="border: 2px solid red;" type="checkbox"/>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신청일	2015 년 11 월 30 일

•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저장은 회원은 일주일동안, 비회원은 브라우져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민원바구니담기
임시저장
취소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각 시설에서 제공

[서식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	피해일시		피해장소	
보호시설 입소기간	20부터 20까지 입소(중)	용도		
위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인)		

[서식 5]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				
입증방법	붙임 1. 증거사진 2. 목격자 진술서 등			
상기 ○○○는(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인)		

4. 취약계층 증빙서류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2.>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정일시	년 월 일
결정주문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한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 원을 지급한다.
이유	
년 월 일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직인	

4. 취약계층 증빙서류

▶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기타

구분	증빙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4. 취약계층 증빙서류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1. 고용보험(www.ei.go.kr) 로그인



2. 조회>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4. 취약계층 증빙서류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본래까지 계속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1년 이상 5년 2개월 이하의 실업기간에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1년 이상 동안에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개월간 피보험자격기간(실업급여금의 기초가 될 날)이 총상하여 18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임)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에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한 사유에는 자기사실으로 인한 퇴직은 제외함)
- 근로의 의사에 능하여 인공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 상실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실업, 휴업, 휴가 종료로 인한 기간연장 제외)
- 실업급여 수급가능 범위는 각각 고용보험(고용보험) 180일 또는 180일 이상인 경우임
- 연도에 이후 새로운 고용일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기간 안내



> 피보험 상세이력

상용이력 | 실업이력 | 10개의 보기

연번	사업장명	적용기간	자격변경일	상태	선택
1			20	취직	<input type="checkbox"/>
2			20	실업	<input type="checkbox"/>
3			20	취직	<input type="checkbox"/>
4			20	실업	<input type="checkbox"/>
5			20	취직	<input type="checkbox"/>
6			20	실업	<input type="checkbox"/>
7			20	취직	<input type="checkbox"/>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피보험 상세 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제출전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제출전송

고용보험 전체사업장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제출전송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안내

인쇄 : 해당 내역서를 인터넷 상으로 열람하시고 **특히 출력**을 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전송 : [전자통지서 수신여부]가 '예'로 되어있는 회원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파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Google, Yahoo, Hotmail 등 외국사회와 사내메일은 수신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웨이치>최종발부수령에서 전자통지서 수신여부' 및 이해할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확인을 위하여 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공학중앙 또는 타기관 등을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조회>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인쇄

접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문의) ☎ 1661-400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